양 해 각 서

(사)스페셜올림픽코리아(이하 "스페셜" 이라 한다.)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"진흥원" 이라 한다.)은 발달장애인 콘텐츠 개발 및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이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, 스페셜올림픽 확산 및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기본내용)

(1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지적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콘텐츠의 공동개발 추진

(2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상호 주관하는 행사에 후원

(3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상호 협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

(4) "진흥원" 은 스페셜올림픽에 콘텐츠 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

제3조 (콘텐츠 공동개발)

(1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상호 협의하여 개발하고 보급한다.

(2)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4조 (후원)

(1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상호 주관하는 사업에 후원한다.

(2) 제1항의 후원 및 지원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, "진흥원" 은 "스페셜" 이 주관하는 사업에 국내 콘텐츠 업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.

제5조 (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)

(1) "스페셜" 이 추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에 "진흥원" 은 동참하고 공동 홍보 한다.

(2) 제5조 1항의 캠페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다.

(3) "진흥원" 이 주관하는 행사에 "스페셜" 이 추천하는 장애인들을 초대하여, 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(4) 제5조 3항의 사업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6조 (홍보)

(1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협력사업에 대한 홍보를 각각 진행하며 홍보 결과를 상호 공유한다.

(2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상호 홍보매체에 CI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 (양해각서의 이행)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은 이 양해각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제8조 (효력 및 협약기간) 이 양해각서는 "스페셜" 의 대표와 "진흥원" 의 대표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9조 (협약의 변경) 협약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 (기타사항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.

제11조 (분쟁해결)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"스페셜" 과 "진흥원"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.

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0월 12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원장 송 성 각

(사)스페셜올림픽코리아

회장 나 경 원